창동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

- 전기설비 공사 시방서 -

목 차

- 1. 공 통 사 항
- 2. 배관,배선공사
- 3. 기기설치공사
- 4. 접 지 공 사
- 5. 옥외 관로 매설 및 노출장소 공사

1. 공통사항

1-1. 적용법위

* 본 시방서는 전기, 통신 및 방재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.

1-2. 적용범규

- *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.
 - · 전기사업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· 전기공사업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
 - 한국공업규정
 - ·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
 -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
 - · 소방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, 소방시설 설치유지
 - · 시설 기준규칙
 - · 전기통신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· 전기통신 공사업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· 체신부 관계규정
 - · 환경보존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· 기타 관계법령

1-3. 공사진행

- *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 - 가. 공사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,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.

- 나.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.
- 다.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시공동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라.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않은 부분일지라도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 및 당연히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, 시공하여야 한다.
- 마. 전력 수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바.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사. 본 시방과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히하여야 한다.
- 자. 공사 진행중 시설물의 파괴,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.
- 차. 공사 진행중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(전, 중, 후)첩3부, 제시험 성적서, 제측정표 (절연, 접지저항, 전기 계측정등)을 채택하여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상기 사항을 천재지변등을 제외한 자연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하에 따른 공사비 감각등의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원의 임의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-4. 시 방 적 용

- * 본 설계도서에 명기 및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 - ㆍ 관계법령 및 자재 시방서
 - ·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
 - · 방재설비 시방서 및 일반 시방서

- ·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
- ·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

1-5. 대 행업무

* 공사 수급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본 공사의 기능이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관서 (한국전력공사,소방서,전화국)에 허가,검사등의 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일반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.

1-6. 부분변경

*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기기 위치의 변경,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되며, 도급공사 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.

2. 배관, 배선공사

2-1. 배 관 공 사

- 가.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.
- 나.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고 경질 비닐관 사용시의 복수류는 금속제를 사용한다.
- 다.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포함 외경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40% 이하 이어야 하며 전화용 케이블 수용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.
- 라.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4개소 이하이며,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한다.
- 마. 배관의 1구간이 25M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복스를 사용한다.
- 바.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.

· 4각 54MM : 28C 이상 접속회로

· 4각 44MM : 22C 이상 접속회로

/ 1면 2방출 이상 접속회로

/ 16C 4본 접속회로

· 8각 44MM : 16C 3본 이하 접속회로

(1면 1방출 이하)

- 사. 관경 28MM 이상의 굴곡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.
- 아. 금속관을 지중 매설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청 도료 3회 이상 도포 후 100M에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.
- 자. 습기,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.

- 차. 경질 비닐전선관의 구조물 매입 부분중 옥탑과 지붕층 스라브 외장 경관 관로 접속은 온도차에 의한 익스펜숀을 고려한다.
- 카. 모든 복스는 소정의 복스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.

2-2. 배선공사

- * 아래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대한 전기협회의 "공사 표준 시방서"에 의하며 상호 중복된 사항은 본 시방을 우선한다.
 - 가.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.
 - 나. 통전선에는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통선하며 도체의 피복이 훼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.
 - 다. 전력용 도체 피복은 아래에 의해 식별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기 기구와의 접속단자에 컬러마크 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.

전 기 방 식		 청 색 	- 흑 색 	┬───── 절색 ⊥	백 색 	- 녹색
 ਜ਼ੁ-	 1상 2선식 		•	•		
	「 1상 3선식		•	•	- 중 성상	 _ 접 지 _
 류 	3상 3선식	•	•	•		
	3상 4선식	•	•	•	 중성상 -	
직	류	 부 극		├───── 정 극 		

라. 전선의 상호접속은 해당 기기용 복스 이외의 개소에서는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점검구를 설치한 후 박스 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아래에 의한다.

· 단면적 14MM2 이하 : 600V 105 $^{\circ}$ 비닐 난연설 스프링 콘넥타

· 단면적 22MM2 이상 : 압착 콘넥타의 절연테핑

· 간선용 저압 케이블 : 자기 수축형 접속키드

마. 도체와 기기 기구와의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되 설계도 특기 시방서등에 명시가 없는한 아래 경우에 제외한다.

- · 접속기기 기구에 압착단자효과 이상의 처리시설 부착
- · 단선도체 2.0MM2 이하 사용회로
- · 기타 특수한 경우
- 바. 수지관로 닥트내의 배선은 풀복스등에서 도체수직 하증지지를 위해 아래 간격이하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 │ 전선 단면적 └─────	 통신 케이블 	최대 지지간격	H]	 고
	 0.65 / 20P 이하 0.65 / 20P 이하	3 0 M		
250MM2 이하	0.65 / 30P 이하 0.65 / 50P 이하	2 0 M 1 5 M		
325MM2 이항 	0.65 / 50P 이하 	1 O M		

사. 이중 천정내에서 해당 기기용 복스에서 기구로 인출되는 전선은 금속가요 전선관 내에 수용하여 양측의 관단은 콘넥타로 견고히 밀착하고 가요관의 최대긍장은 3M 이하로 하며 습기가 발생, 상주하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3. 기기 설치공사

3-1. 전 등 전 열

- 가. 조명기구는 해당 복스 또는 지지물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매입 형광등류는 천정 반자틀을 보강하여 취부하고 산데리어와 중량물 기구는 별도 행거를 시설하여 부착한다.
- 나. 모든 기구는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면과의 틈이 없도록 밀착되어야 한다.
- 다. 옥외벽측과 습기 또는 물기가 상주 발생하는 장소의 기기는 방수형으로 사용하고 취부후 복스에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-2. 동력설비

- 가. 전원공급 및 제어용 배관과 시설된 전동기 및 기계 기구류와의 접속은 관단에서 방수형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 전선을 수용한다.
- 나. 전동기 조작반 (MCC)은 바닥에서 100MM이상의 콘크리트 기초위에 시설하고 반의 후면과 측면은 벽면에서 700M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.
 - 단,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의 협의하여 별도의방법으로 시설할 수 있다.
- 다.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않은 시설의 자동제어 회로용은 기계 공사에 포함한다.

4. 접지공사

4-1. 공통사항

* 접지 공사를 시행하는 공작물의 구조물은 전시설비 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부분외는 본 항목에 따른다.

4-2. 접지종별

* "4-1" 항과 설계도에 분류된 종별에 의해 규정 저항치에 부합 되어야 한다.

4-3. 접지보완

* 접지 장소의 토지불량 등으로 종별 규정치 미달 경우는 설계도 이외의 보조 접지극 또는 매설 접지선 등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.

4-4. 시 공 방 법

- 가. 접지극은 개스 산등의 부식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의 상단이 지표 750M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.
- 나.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의 2.0MM 이상을 격리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도 2.0MM 이상 격리한다.
- 다. 전등,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.6MM 이상의 전선을 이용한다.
- 라. 금속관 배관과 관상호 및 복스류와의 본딩용 접지선은 설계도에 명시없는한 1.6MM 이상 전선으로 접지한다.
- 마. 각종 접지공사에는 견고 미려한 접지 측정 단자반을 옥내 또는 외측에 시설하고 단자반 문은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.
- 바. 수도관등을 이용한 제 3 종 접지시는 설계서에서 명기없는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사. 구내 보안등의 접지는 설계도에 의해 개별접지 또는 연접지로 시행하여야 한다.

5. 옥외 관로매설 및 옥내 노출장소 공사

5-1. 옥외공사

- * 설계도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.
 - 가. 사용 전선관은 경질비닐 전선관을 원칙으로 한다.
 - 나. 매설관의 깊이는 차도의 횡단시 지표 1,200MM 이상이며 기타 부분은 지표 700MM 이상으로 한다.
 - 다. 수공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여 수공내의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하고 도체의 방향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케이블 걸이를 시설한다.
 - 라. 수공뚜껑의 철판 제작시는 무늬 강판을 사용하고 방청도장 2회의 지정색 에나멜 도장 3회 이상 도장한다.
 - 마. 옥내로의 인입,인출관로는 외측 구조물에 관의 지수판을 시설하여 관내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.
 - 바. 강관과 비닐관의 접속은 수공에서만 허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 접속 후 엑스펜숀 보호관과 콘크리크로 충분히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.
 - 사. 수공내로 통과되는 도체는 회로별 케이블 겉이를 바인당하고 도체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지한다.
 - 아. 수공내에서 접속되는 도체의 접속 부위는 별도의 지지대를 형성하며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.

5-2. 노출장소

- * 설계도에 명기된 사항외는 본 항목에 의하며 노출장소라 함은 배관과 배선의 노출 시설개소를 말한다.
 - 가. 노출관의 구조체 지지방법은 설계도에 표기된 상세도에 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.
 - 나. 이중 천정내 전선관의 노출배관은 천정틀 달대볼트 또는 전용 달대볼트에 콘센트 크램프로 지지하고 표준가격은 1,500M임.

- 다. 분전반, 단자반, 중간복스등의 시설은 벽체에 별도 앙카를 시설하여 견고히 지지하며 앙카와 반의 접속은 반의 측면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정날개를 형강으로 부착한다.
- 라. 노출관로 및 닥트 트레이류의 배선은 접속기기의 위치와 경과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상호꼬임, 교차가 없도록 시설한다.
- 마. 기준 구조체의 노출배관은 구조물에 관이 밀착되게 시설하며 새들로 1,500MM을 표준으로 지지하고 복스 기구류는 노출형을 사용한다.
- 바. "마"항의 복스 기구류는 개별로 앙카 시설한다.